

## 1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건설교통부령 제164호 1999. 1. 25

### 개 정 이 유

건설업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시공능력 등의 합산제도를 조정하여 업종전문화와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공제제도 및 해외고용관련 기준을 조정하여 퇴직공제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실업의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3호)되어 위 임관련 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가. 건설업의 면허 또는 등록 기준의 하나인 다른 업종 건설업 영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양수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때에도 양도인의 시공능력을 양수인의 시공능력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종전문화를 위한 양도·양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함(제18조제3항제4호 및 제22조제4항).

나.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주계약자가 다른 공동수급인이 분담하여 시공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실적의 2분

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건설업자의 공사실적에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능력 평가항목중의 건설공사실적 합산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제22조제7항).

다.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에 있어서 실적산정 및 신용평가 등을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공능력의 공시시기를 6월말에서 7월말로 조정함(제24조제1항).

라.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퇴직공제불입금의 경우 종전에는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외의 공사에서 불입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무가입대상공사에서 불입한 금액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과 퇴직공제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함(별표 1 및 별표 2).

마. 시공능력평가를 위한 신인도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내 근로자를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의 실업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별표 1 및 별표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과 특별시장”을 “특별시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5조 본문 및 제6조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본문중 “건설교통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중 “지방국토관리청장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건설업과 건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겸업하는 자가 업종전문화를 위하여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제22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설업의 양도가 제1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이 규칙 제18조제3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제5항중 “종전법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으로 하고, 동조제7항제2호중 “법 제29조제3항 단서”를 “법 제29조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단서”로 하며,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의 주계약자로서 다른 공동수급인이 분담하여 시공하는 공사에 대한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한 경우

제24조제1항중 “6월 30일”을 “7월 31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공사금액”을 “하도급금액”으로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다목 전단중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공사대금부터”를 “다음 공사대금부터”로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 본문중 “건설업자”를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로 한다.

제37조제1항중 “전문건설업면허”를 “건설

업면허”로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2)중 “전년도중 영 제8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의 공사에 종사한 건설근로자를 위하여”를 “전년도중”으로 하고, 동호라목 본문중 “±15/100”를 “±25/100”로 하며, 동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

별표 2의 제1호다목(2)중 “전년도중 영 제8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외의 공사에 종사한 건설근로자를 위하여”를 “전년도중”으로 하고, 동호라목 본문중 “±15/100”를 “±25/100”로 하며, 동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국내인력을 해외건설현장에 고용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더할 수 있음.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 관 명

(우)000-000 / 주소	/전화 (00)000-0000	/전송000-0000
000과 과장000	사무관(서기관)000	담당자000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신

인

제 목 : 건설업면허 및 등록현황 보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6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반건설업면허의 현황

( . . . . . 현재)

구분 ①업종별	② 전 분 기 까지누계	금분기변동사항					⑧금분기 까지누계
		③증감계	④면허	⑤전입	⑥전출	⑦면허취소	
합 계	면허수						
	업체수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2. 전문건설업면허 및 등록의 현황

(2쪽)

( . . . . . 현재)

①업종별	구분	②전분기 까지누계	금분기변동사항				⑧금분기 까지누계
			③증감계	④면허 또는 등록	⑤전입	⑥전출	
합계	면허·등록수 업 체 수						
의장공사업							
토목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조적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창호공사업							
지붕·판금공사업							
철근·코크리트공사업							
철물공사업							
기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포장공사업							
수중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축물조립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온실설치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송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스시설시공업 2종							
가스시설시공업 3종							
가스시설시공업 4종							
가스시설시공업 5종							
난방시공업 1종							
난방시공업 2종							
난방시공업 3종							
시설물유지관리업							

30300-10322보  
98.10.29 개정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sup>2</sup>(재활용품)